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1) 공급규모

가.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29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600세대 중 일반분양 1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총 11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10% 범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 59A | 59B | 59C | 74 | 84A | 84B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 국가유공자 | 1(5) | - | - | - | 1(5) | - | 2(10) |
| | 장기복무 제대 군인 | - | 1(5) | - | - | - | - | 1(5) |
| | 10년 이상 장시복무군인 | | 1(5) | | | | | 1(5) |
| | 중소기업 근로자 | 1(5) | - | - | - | 1(5) | - | 2(10) |
| | 장애인 | 경기도 | - | - | - | 1(5) | 1(5) | 2(10) |
| | | 서울시 | - | - | - | 1(5) | 1(5) | - |
| | | 인천 광역시 | - | - | - | - | - | 1(5) |
| | 합 계 | 2(10) | 2(10) | - | 2(10) | 4(20) | 1(5) | 11(55) |

가.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한다.

2. 공급 일정(예정)

| 구 분 | 일 정 (예정) | | 참 고 사 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02.13.(금) | | 당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 2026.02.23.(월) 16:00까지 |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참조)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6.02.23.(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
| | 견본주택 방문청약 | 2026.02.23.(월) 10:00~14:00 |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6.03.04.(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
| 정당계약 기간 | 2026.03.16.(월) ~ 2026.03.18.(수) 10:00~16:00 | | 당사 견본주택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또는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제외)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양주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 구 분 | 양주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구 분 | 양주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4.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하여 제반 서류를 구비 후 견본주택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동·호 배정)에서 제외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첨 시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2의 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탑입별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소유 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https://양주더플래티넘.kr/>)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
- 홈페이지 : <https://양주더플래티넘.kr/>
- 분양문의 : 031-821-9990

※ 참고자료

1) 견본주택 위치도



[별첨1] 신청양식(추천양식)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내역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